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2 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:김성환・남인순・이원욱

백혜련 · 양정숙 · 권인숙

홍정민 · 어기구 · 박홍근

윤관석 · 김영배 · 양원영

우워식 · 신정훈 · 이소영

이장섭 · 민형배 · 이해식

김승남 · 신현영 · 이병훈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%로 끌어올리는 '재생에너지 3020' 정책을 발표하였으며,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 0%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신·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

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5제2항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5제2항 전단 중 "총전력생산량의 10%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"를 "연도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5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	제12조의5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
무화 등) ① (생 략)	무화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	2
의무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를	
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	
전량(이하"의무공급량"이라 한	
다)의 합계는 <u>총전력생산량의</u>	<u>연도별로</u>
10%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	
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	
우 균형 있는 이용·보급이 필	
요한 신·재생에너지에 대하여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	
해당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	
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.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